#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안내문(도배·장판 공사용)

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전세임대주택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도배 · 장판 공사비를 지원해드립니다. 도배·장판 공사를 원하는 세입자는 전세계약 체결 후 경기주택도시공사로 연락하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, 공사업체 관계자께서도 아래사항에 유의하셔서 시공 및 비용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1. 도배·장판 공사 지원내역

- 도배·장판 공사는 입주자가 직접 시공업체에 의뢰
- 지원금액 : 부가세 포함하여 최대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
- 전세임대 수혜기간(20년)내 10년마다 1회 지원 가능
- 시공업체 선정 : 일반과세자-세금계산서 발행 / 간이과세자-현금영수증 발행

## 2. 도배·장판 공사 시 유의사항

- 공사 전에 반드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문의하여 사전협의 후 공사에 착수
  ⇨ 임의로 시공하시면 공사비 지급 불가
- 공사 전·후 사진을 촬영
  ⇨ 현관 입구에서 전체적으로 공사 전·후 모습을 같은 위치에서 비교 가능하도록 촬영
  ⇨ 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비스듬히 촬영하여 시공지점이 가급적 넓게 보이도록 촬영
  ⇨ 촬영지점은 모서리진 곳, 창문·방문이 보이는 곳 등 특이지점을 선정
  ⇨ 공사 전·후에 달라진 모습이 비교가 가능하도록 촬영
  ⇨ 도배지 및 장판 자재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 촬영

## 3. 비용청구시 제출 서류

- 세금계산서
  ⇨ 공사비 총액(부가세 포함)이 60만원 이상인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 부담분(60만원)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(공사비 : 545,455원, 부가세 : 54,545원)
  ⇨ 6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입주자에게 청구
  ⇨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우편으로 보내는 당일로 기재
- 사업자등록증 사본
- 도배·장판 업체 통장 사본
- 견적서
- 교체공사 완료확인서
  ⇨ 입주자의 서명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며, 입주자는 하자 여부를 확인 후 서명
  ⇨ 공사비 내역에는 공란이 없이 작성
- 공사 전·후 촬영한 사진대지

## 4. 도배·장판 관련 문의사항

- 지역별 담당 법무사(법무법인)로 문의(21페이지 참조)

**※관련 서식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(www.gh.or.kr)에서 정보마당 ▶ 관련서식자료실 ▶ 전세임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.**

# 도배·장판 교체공사 완료확인서(1)

<table>
<tr><th colspan="2">입주자 확인</th></tr>
<tr><td>확 인 일 시</td><td>월 일</td></tr>
<tr><td>확 인 자</td><td></td></tr>
<tr><td>서 명</td><td></td></tr>
</table>

## ◆ 공사비 내역

<table>
<tr><td colspan="2">주 소</td><td colspan="6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등기부상면적</td><td>(㎡)</td><td colspan="2">입주자성명</td><td></td><td>전화번호</td><td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 rowspan="7">공사내역</td><td>구분</td><td colspan="2">제품명(코드번호)</td><td>수량</td><td>공사비</td><td>부가세</td></tr>
<tr><td>벽지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(㎡)</td><td>원</td><td>원</td></tr>
<tr><td>바닥재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(㎡)</td><td>원</td><td>원</td></tr>
<tr><td>부자재</td><td colspan="3"></td><td>원</td><td>원</td></tr>
<tr><td>인건비</td><td colspan="3"></td><td>원</td><td>원</td></tr>
<tr><td colspan="4">소 계</td><td>원</td><td>원</td></tr>
<tr><td colspan="5">총공사비(부가세 포함)</td><td>원</td></tr>
<tr><td>공사업체</td><td>상호명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대표자</td><td></td><td>전화번호</td><td></td></tr>
<tr><td>비용부담</td><td>총 공사비</td><td colspan="2">원</td><td>경기주택도시공사</td><td>원</td><td>입주자</td><td>원</td></tr>
</table>

## ◆ 입주자 및 시공업체 유의사항

- 도배장판 교체공사비는 부가세 포함 60만원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지원해드리며, 6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.
  ※ 세금계산서 발행 시 유의사항
  1. 공사비 총액(부가세 포함)이 60만원 이상인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 부담분만 발행.
  2.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우편발송일로 기재.
- 시공 전에 반드시 견적서(자재명, 수량, 단가를 포함한 상세견적)를 경기주택도시공사로 보내고 유선으로 시공 가능 여부에 대해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시공하셔야만 지출이 가능합니다.
- 시공 후 아래의 붙임서류(사진)와 완료확인서를 작성하여 세금계산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통장사본, 견적서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.
  ※ 공사 전·후 비교 가능한 사진을 붙여야 함

| |
|---|
| - 법무법인 서 린 :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22, 4층(하동, 광교법조프라자)<br>- 법무법인 씨앤케이 :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7-2, 701호(하동, 원희캐슬씨동)<br>- 법무법인 씨케이 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125, 606호(서초동, 로이어즈타워)<br>- 법무법인 덕 수 :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442, 7층(역삼동, 흥국생명빌딩)<br>※ 담당지역 법무법인 확인 바랍니다. |

- 입주자께서는 반드시 하자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자 확인란에 서명해주시기 바라며, 공사상 하자에 대해서는 처리절차를 업체와 직접 상의하셔야 합니다.(명함 수령)
-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대금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# 도배·장판 교체공사 완료확인서(2)

공사일 : 년 월 일

<공사 전 사진-전경/거실/방1/방2/방3>

| |
|---|
| |

<공사 후 사진-전경/거실/방1/방2/방3>

| |
|---|
| |

# 도배·장판 교체공사 완료확인서(2)

공사일 : 년 월 일

<공사 전 사진-전경/거실/방1/방2/방3>

<공사 후 사진-전경/거실/방1/방2/방3>

## ◆ 도배장판 시공 안내

- 도배장판 교체공사비는 부가세 포함 60만원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지원해드리며, 6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.

  ※ 세금계산서 발행 시 유의사항

  1. 공사비 총액(부가세 포함)이 60만원 이상인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 부담분만 발행.
  2.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우편발송일로 기재.

- 시공 전에 반드시 견적서(자재명, 수량, 단가를 포함한 상세견적)를 경기주택도시공사로 보내고 유선으로 시공 가능 여부에 대해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시공하셔야만 지출이 가능합니다.

**<도배 · 장판 시공완료 후 구비서류>**

**1.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**

**2. 통장사본**

**3. 견적서**

**4. 사업자등록증 사본**

**5. 도시공사 도배 · 장판 교체공사 완료확인서 - 입주자 확인 서명 받으셔야 합니다**

**6. 공사 전 · 후 비교 가능한 사진 첨부**

# ※ 지역별 담당 법무사(법무법인)

| 권역 | 지역 | 법무<br>법인 | 전화 | FAX |
|---|---|---|---|---|
| 고양권 | 광명시, 부천시, 시흥시<br>고양시, 김포시, 파주시 | 덕수<br>법무법인 | 02-554-5302 | 02-6008-5306 |
| 남양주권 | 가평군, 구리시, 남양주시<br>동두천시, 양주시, 양평군<br>연천군, 의정부시, 포천시 | 씨케이<br>법무법인 | 02-6219-7005<br>02-6219-7006 | 02-6003-0280 |
| 성남권 | 과천시, 광주시, 성남시<br>안양시, 여주시, 용인시<br>의왕시, 이천시, 하남시 | 씨엔케이<br>법무법인 | 031-215-1338 | 0503-130-5661 |
| 수원권 | 군포시, 수원시, 안산시<br>안성시, 오산시, 평택시<br>화성시 | 서린<br>법무법인 | 031-213-1115<br>031-213-3020 | 031-360-6380 |